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12월 24일, 정부

나. 회부일자: 2025년 12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사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 상정, 축조심
사, 의결(수정가결)

제434회 국회(임사회)

제1차 전체회의(2026. 4. 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

1. ~ 3. (생략) ② ~ ⑤ (생략)	<u>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제17조에 따른 산정·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u>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

현행법¹⁾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먼지, 질소산화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한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통합허가) 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용시기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최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를 일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사항 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1.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2. 「지하수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3.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명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령

물 및 황산화물을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거나 폐수를 일일 700m³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고,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한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의 개별법에 우선하여 동 법을 적용하도록 함.

현행법 제15조²⁾에서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통합관리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한 자

②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본배출부과금

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허가배출기준(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나.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2. 초과배출부과금: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허가배출기준 초과 여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등의 종류
3. 오염물질등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自家測定) 여부
6. 그 밖에 대기 및 수질 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⑤ 배출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제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배출부과금 개요]

종류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대기배출 부과금	기본 부과금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일부 시설 면제)	환경오염시설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초과 부과금	먼지,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시안화수소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수질배출 부과금	기본 부과금	유기물질, 부유물질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일부 시설 면제)	환경오염시설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초과 부과금	유기물질, 부유물질,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등 19종 수질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수질오염물질을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일부 시설 면제)	

2024년 기준 통합허가사업장에 부과된 대기배출부과금은 162억 5,900만원으로, 이 중 149억 4,200만원(징수율 91.9%)이 징수되었고, 수질배출부과금은 8억 3,300만원이 부과되어 7억 5,900만원(징수율 91.1%)이 징수되었음.

[연도별 대기배출부과금 징수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	------	------	------	------	------

부과액(A)	2,254	7,074	8,288	10,606	16,259
수납액(B)	1,760	6,169	6,713	9,874	14,942
중소기업 수납액	26	109	327	267	754 (4.6%)
징수율(B/A)	78.1%	87.2%	81.0%	93.1%	91.9%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연도별 수질배출부과금 징수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부과액(A)	18	135	422	455	833
수납액(B)	16	107	428	324	759
중소기업 수납액	10	2	33	104	59 (7.1%)
징수율(B/A)	89.9%	79.2%	81.0%	71.1%	91.1%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징수(수납)된 대기배출부과금 중 중소기업³⁾으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은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7억 5,400만원(4.6%)으로 1건당 수납액은 400만원이고, 수질배출부과금의 경우 5,900만원(7.7%)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징수되어 1건당 수납액은 450만원임.

[연도별 중소기업의 대기배출부과금 징수(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20	'21	'22	'23	'24
수납액	26	109	327	267	754
수납건수	31	92	114	126	186
1건당 수납액	1	1	3	2	4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연도별 중소기업의 수질배출부과금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20	'21	'22	'23	'24
수납액	10	2	33	104	59
수납건수	1	1	6	6	13
1건당 수납액	10	2	6	17	4.5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기업의 대기배출부과금 1건당 징수액은 최하 3,450원에서 최대 2억 9,200만원이고, 수질배출부과금은 최하 3,040원에서 최대 9,100만원임.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중소기업정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징수된 금액으로 살펴보면, 대기배출부과금의 경우 2024년 기준 총 887건의 부과 건 중 500만원을 초과한 징수 건은 114건(12.8%)이고,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186건 중 500만원을 초과한 징수 건은 14건(7.5%)임.

수질배출부과금의 경우 2024년 기준 총 99건의 징수 건 중 500만원을 초과한 징수 건은 25건(25.25%)이고,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13건 중 500만원을 초과한 징수 건은 5건(38.4%)임.

[연도별 대기배출부과금 징수 건수]

(단위 : 건)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건수(A)	169	439	524	610	887
중소기업 건수	31	92	114	126	186
500만원 초과 건수(B)	19	74	72	85	114
중소기업 건수	1	3	8	7	14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연도별 수질배출부과금 부과 건수]

(단위 : 건)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건수(A)	10	22	50	72	99
중소기업 건수	1	1	6	6	13
500만원 초과 건수(B)	1	4	8	13	25
중소기업 건수	1	0	3	2	5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안은 분할납부 대상 범위에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분할납부 대상의 범위]

현 행	개 정 안
○ 천재지변 등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 (추 가)	○ 천재지변 등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 <u>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u>

참고로,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00만원⁴⁾을 초과하는 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별도 사유 없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15592호)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4) 동 개정안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분할납부가 가능한 최소 하한액을 5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합허가 대상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20톤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1·2종 사업장)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형동)

수정가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9.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4.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수정이유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의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가. 부칙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함(안 부칙 제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1조 중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공포한 날”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기 후에 너 지 환경 부 장관은 배출 부과 금 의 납부의무자 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 부과 금을 납부 할 수 없다고 인정 되면 징수를 유 예하 거나 그 금액 을 분 할하여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 ----- ----- ----- ----- ----- ----- ----- ----- ----- ----- ----- ----- ----- ----- ----- <u>. 다만, 배출 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중소기업자인 경 우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제17조에 따른 산정·조정 절차를</u>	제1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개정안과 같음)

	<u>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이 5 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u>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 은 <u>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u> 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 은 <u>공포한 날</u> 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부과금 분 할납부에 관한 적용 례) 제18조제1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 (제17조에 따른 산 정·조정 절차를 거쳐 부과하는 경	제2조(배출부과금 분 할납부에 관한 적용 례) (개정안과 같 음)

	우를 포함한다)하는 배출부과금부터 적 용한다.	
--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제17조에 따른 산정·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부과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제17조에 따른 산정·조정 절차를 거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배출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제1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 ----- ----- ----- ----- ----- ----- ----- ----- 다만,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제17조에 따른 산정·조정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 ⑤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